

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84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06.7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<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> 을 개정 시행(2015.12.24.) 함에 따라 「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」를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개정.
※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□ 주요내용

- 가.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규정(안 제3조)
나. 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,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국장으로 규정 (안 제6조)
다.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·세출 예산 편성 및 공개 조항 신설 (안 제15조)
라. [별표]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안 제4조 관련) 조정

평가분야	현행		개정(안)	
	평가항목	배점	평가항목	배점
	소계	33	소계	31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- BIS 자기자본 비율 - 사회공헌비율 〈신설〉	23 (7) (3) 〈신설〉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- 총 자본비율 - 〈삭제〉 - 국내자본비율	21 (7) 〈삭제〉 (1)
3. 시민이용 편의성	소계	20	소계	21
	나.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의성	5	나.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의성	6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소계	20	소계	22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처리 능력	5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처리 능력	7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	소계	10	소계	9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. 시와의 협력사업	5 5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	5 4

- 개정조례안** : 불임1
 - 신·구조문대비표** : 불임2
 - 관계법발췌서** : 불임3
 - 관련사업계획서** : 해당없음
 - 예산수반사항**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(결과)**
- 예고기간 : 2016.4.15. ~ 5.6.(20일간)
 - 예고결과 : 의견 있음(불임)
- 기타 참고사항** : 불임
- 현행조례 : 불임4
 - 방침결정문 : 불임5

입법예고 제출 의견 및 검토결과

의 견 제출자	제출 방법	의 견 내 용	검 토 결 과	반영 여부
세정과 한봉우	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례 제2호 제5호 개정내용의 문맥 전·후 전체내용과 연계되도록 수정 - 5. “금고지정” 이란 금융기관 중 <u>해당 자치단체</u>의 금고업무를 담당 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 한다. (“자치단체” 를 “해당 자치단체” 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례 제2조 제5호 내용 일부 개정 - 5. “금고지정” 이란 금융기관 중 <u>시</u>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 (“해당 자치단체” 를 “시” 로) 	반영
세정과 한봉우	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[별표]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배점 오탏 수정 - OCR센터 운영능력 및 배점 오탏 : “3점” 을 “8점” 으로 기재 	<p>평가분야 :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항목 :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- 배점 : “8” → “3” 으로 수정</p>	수정

< 불임 1 >

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안산시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특정자금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자치단체”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해당 자치단체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”를 “시장과 시”로 “쌍방”을 “양쪽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찰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 재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금고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,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
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비밀로 한다”를 “공개하지 아니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금고계약만료 110일”을 “금고약정 기간 만료 9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60일”을 “40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심의결과”를 “평가결과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고의 의견”을 “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”으로 한다.

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협력사업비 공개)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세 정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하 순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입관리계장 한 봉 우
	담당자 전화번호	한 봉 우 (행정 2185)

[별표 1]

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제4조 관련)

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
	총계	100
	소계	31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10
	- 국외 평가기관	(6)
	- 국내 평가기관	(4)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21
	- 총 자본비율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7점)로 평가	(7)
	- 고정이하 여신비율	(7)
	- 자기자본 이익율	(6)
	- 국내 자본비율 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에 따름 * 금융감독원,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(1)
	소계	17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수준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5
	다. 시에 대한 대출금리	4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2
	소계	21
3. 시민이용 편의성	가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7
	나.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6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8
	소계	22
4. 금고업무관리능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7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	7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3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	소계	9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	5
	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	4
	*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는 ‘실적’으로만 평가, “시와의 협력사업”은 ‘계획’으로만 평가	

[별표 2]

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

I. 일반원칙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,
다만, 항목 2(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)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

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(31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10점)

-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·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비교·평가
- 평가방법
 -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
 -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정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1점)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안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 - (1) 총 자본비율(안정성, 7점)
 - (2) 고정이하 여신비율(건전성, 7점)
 - (3) 자기자본 이익율(수익성, 6점)
 - (4) 국내 자본비율(공공성, 1점)
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(17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점)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관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5점)

-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시에 대한 대출금리(4점)

-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(2점)

-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3. 시민이용 편의성(21점)

가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(7점)

-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의성(6점)

-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되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※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
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8점)

-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납부 편의성 제고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방안,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4. 금고업무 관리능력(22점)

가.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(5점)

-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7점)

-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(7점)

- 금고 관련 세입·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(안)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
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(3점)

-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(9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(5점)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(4점)

-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< 불임 2 >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안산시</u>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,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<u>안산시</u>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금고”란 <u>자치단체의</u> 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「은행업」에 <u>의한</u> 금융기관을 말한다. 2. (생략) 3. “특별회계”란 <u>특정자금</u>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회계를 말한다. 4. “기금”이란 <u>자치단체</u>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5. “금고지정”이란 금융기관 중 <u>해당</u> <u>자치단체</u>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 6. “금고약정”이란 <u>지방자치단체</u>의 장과 <u>해당</u> <u>자치단체</u>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. 	<p>제2조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 <u>안산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 ----- ----- ----- ----- 따른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<u>특정자금</u> -----. 4. ----- <u>안산시</u>(이하 “시”라 한다.)----- ----- -----. 5. ----- ----- 시 ----- -----. 6. ----- <u>시장과 시</u> ----- ----- ----- --- 양쪽 ----- ---.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금고지정) ① <u>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금고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기관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금고는 회계,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-----)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찰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 재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 할 수 있다.</p> <p>② 금고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금고지정 평가기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5.(생략)</p> <p>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.</p> <p>③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-----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</p> <p>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.</p>
제5조 (생략)	제5조 (현행과 같음)
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-----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, ~ 3.(생략)</p> <p>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,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<u>비밀로 한다.</u>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자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1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, ----- -----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④ ----- ---. ----- ----- <u>부위원장</u> - -----.</p>
제7조(생략)	제7조 (현행과 같음)
제8조(생략)	제8조 (현행과 같음)
제9조(생략)	제9조 (현행과 같음)
제10조 (생략)	제10조 (현행과 같음)
<p>제11조(금고지정 절차)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<u>금고계약만료 110일</u>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,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 기간<u>만료 60일</u>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-----) ① ----- ----- ----- <u>금고약정 기간 만료 90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40일</u> ----- --.</p>

현 행	개 정 안
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<u>심의결과</u> 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	④ ----- 평가결과 - ----- -----
제12조 (생략)	제12조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금고약정의 해지)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	제13조(-----)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 -----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-----.
제14조 (생략)	제14조 (현행과 같음)
제15조 <신설>	제15조(협력사업비 공개)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「지방 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제16조 <신설>	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현 행			개 정 안		
(별표)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제4조 관련)			(별표 1)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제4조 관련)		
평가분야	평 가 항 목	배점	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
	총 계	100	계	총 계	100
	소 계	<u>33</u>		소 계	<u>31</u>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 용도 및 재 무구조의 안 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- 국외 평가기관 - 국내 평가기관 ※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	10 (6) (4)		가.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* <삭제>	10 (6) (4)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- BIS 자자본 비율	<u>23</u> (7)		나. (현행과 같음) - 총 자본비율	<u>21</u> (7)
	〈신설〉 - 고정이하 여신비율 - 자자본 이익률 - 사회공헌 비율 〈신설〉	(7) (6) (3) (신설)	1. (현행과 같 음)	※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 (안정성 7점)로 평가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<삭제> - 국내자본비율 * (현행과 같음)	(7) (6) (4) (1)
	•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신림조합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에 따름 *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성 평가 또는 견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		* ----- 행정자치부 ----- ----- -----	
	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수준	소 계 17	2. (현행과 같 음)	소 계 17	
	가. ~ 라. (상력)	17		가. ~ 라.(현행과 같음)	17
	소 계	20		소 계	<u>21</u>
	가. (상력) 나.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리성 *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평수로 선정되는 지점은 제외 다 (상력)	7 5 8	3. (현행과 같 음)	가. (현행과 같음) 나.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리성 * (현행과 같음) 다. (현행과 같음)	7 6 8
	소 계	<u>20</u>	4. (현행과 같 음)	소 계	<u>22</u>
	가. (상력) 나. (상력)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. (상력)	5 7 5 3		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. (현행과 같음)	5 7 7 3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	소 계	<u>10</u>	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	소 계	<u>9</u>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. 시와의 협력사업 * 지역기회에 대한 기여, 시와의 협력사업	5 5	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	5 4

<p>평가는 시의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</p>	<p>*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는 ‘실적’으로만 평가. “시와의 협력사업”은 ‘계획’으로만 평가</p>
<p>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</p>	
<p>○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</p>	
<p>○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.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</p> <p>※ 다만, 항목 2(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기준), 항목 5(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)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.5점에서 최소 0.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.</p>	
<p>(신설)</p>	
<p>〈설제〉</p>	
<p>〈설제〉</p>	
<p>〈설제〉</p>	
<p>〈설제〉</p>	
<p>〔별표 2〕</p>	
<p>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</p>	
<p>I. 일반원칙</p>	
<p>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.</p>	
<p>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.</p> <p>다만, 항목 2(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), 항목 5(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)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세부 항목에 적용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</p>	
<p>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</p>	
<p>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(31점)</p>	
<p>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10점)</p>	
<p>○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</p>	
<p>○ 평가방법</p>	
<p>-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</p>	

현 행	개 정 안
	<p>-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</p> <p>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1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인산시금리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확인 ○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총 자본비율(인정성, 7점) (2) 고정이하 여신비율(선전성, 7점) (3) 자기자본 이익률(수익성, 6점) (4) 국내자본비율(공공성, 1점) <p>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(17점)</p> <p>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관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<p>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5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<p>다. 시에 대한 대출금리(4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<p>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(2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<p>3. 시민이용 편의성(21점)</p> <p>가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(7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<p>나.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의성(6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되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※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 <p>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8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납부 편의성 제고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방안,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<p>4. 금고업무 관리능력(22점)</p> <p>가.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(5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선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현 행	개 정 안
	<p>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7점)</p> <p>○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</p> <p>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(7점)</p> <p>○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(안)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</p> <p>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(3점)</p> <p>○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</p> <p>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(9점)</p> <p>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(5점)</p> <p>○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</p> <p>나.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(4점)</p> <p>○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</p>